

세무회계저널
제16권 제3호 2015년 6월 pp.73~100
한국세무학회

회계이익 변화에 따른 법인세부담액 변화율의 비대칭성에 대한 연구*

이현아** · 고운성***

<요 약>

본 연구는 회계기준상 비용과 세법상 손금을 인식하는 기준이 상이함으로 인하여 회계보고와 세무보고 간의 비대칭관계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은 태생적인 차이점으로 인하여 차이가 존재하며,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해 그 차이는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비대칭성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증대시키게 되며, 그로 인한 두 정보의 차이는 정보이용자로 하여금 정보 해석에 혼란을 겪게 하고 이익조정 및 조세회피 내역의 파악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의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지를 검토하고 세법규정의 정비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과세소득은 회계이익에 기초를 하여 산출되기 때문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은 정비례하여 증감하게 된다. 그러나 특정항목의 경우에는 이러한 정비례관계가 형성하지 않게 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세무조정 사항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손충당금 및 접대비 등과 같이 회계기준과 세법이 별도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항목의 경우에는 회계 상 인정되는 비용이 세법상 한도금액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결산 상 비용이 증가하여 회계이익은 기업이 계산한 금액만큼 감소되에도 불구하고 과세소득은 해당금액 만큼 감소하지 않게 된다. 즉 세법 상 손금 산입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는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회계이익은 감소하지만 과세소득은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회계이익의 감소와 동일한 비율로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회계이익의 변화에 따른 법인세부담액 변화율이 비대칭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Anderson et al.(2003)의 원가 비대칭성 모형을 준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 결과 회계이익의 감소에 따른 법인세부담액의 감소율은 회계이익의 증가에 따른 법인세부담액의 증가율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나 회계이익의 변화에 따른 법인세부담액 변화율이 비대칭임을 검증하였다. 특히, 대손충당금과 접대비 항목이 전기에 세법 상

* 이 연구는 2015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가천대학교 경영대학 조교수, 공인회계사, hallee@gachon.ac.kr, 제1저자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경영대학 부교수, max0907@hufs.ac.kr, 교신저자

손금산입되는 한도액과 유사하게 계상된 경우에는 회계이익의 감소에 따른 법인세부담액의 변화율이 더욱 작은 것으로 나타나 법인세부담액 변화율의 비대칭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세법과 회계기준이 별도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항목을 이용한 이익조정이나 조세회피 행위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의 관점에서 벗어나 동 항목들로 인하여 회계보고와 세무보고 간의 관계가 비대칭적인 행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손금산입 한도액이 정해진 세법 규정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회계보고와 세무보고 간의 비대칭성은 재무정보이용자들이나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공시되는 회계자료를 통해 세무관련 정보를 유추함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조세정책 관련 담당자나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손금산입 한도액 관련 세법의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숙고하게 하는 기회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주제어〉 회계이익, 과세소득, 법인세부담액, 비대칭성

I. 서 론

회계보고와 세무보고의 차이에 대한 연구는 미국에서 2000년대 초반 회계부정이 발생한 기업들의 경우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크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 Lev and Nissim(2004)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이익지속성과 같은 회계이익의 속성을 설명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고, Hanlon(2005)은 과세소득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회계이익이 제공하는 정보 외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고하였고, 노희천 (2009)은 세무이익이 주가수익률에 반영되는 추가적인 정보효과가 있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간의 차이를 야기하는 회계기준과 세법 규정에 주목한 Calegari(2000)와 오광욱과 정석우(2010)는 회계이익의 구성요소 중 발생액을 세법과 정합성이 높은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기업들이 세분화된 항목들을 조세회피 및 이익조정을 위하여 차별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이익조정이나 조세회피의 관점에서 회계보고와 세무보고의 차이를 바라본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회계기준상 비용과 세법상 손금을 인식하는 상이한 기준으로 인하여 회계이익과 과세소득간의 비대칭관계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과세소득은 회계이익에서 출발하여 세무조정에 의해 산출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과세소득은 회계이익과 정(+)비례의 관계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즉 대부분의 영업 관련 수익 및 비용 항목의 경우, 회계기준과 세법이 동일한 기간에 수익(익금)과 비용(손금)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산 상 계상된 금액은 세무조정 없이 과세소득에 반영되고, 이는 회계이익이 증가(감소)하면 과세소득은 증가(감소)하고 회계이익이 증가하는 경우와 감소하는 경우 과세소득은 동일하게 변화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회계기준과 세법 간의 정합성이 높고 공격적인 조세회피가 어

럼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이용자들은 회계이익이 증가(감소)하면 과세소득은 증가(감소)하고 회계이익이 증가하는 경우와 감소하는 경우 과세소득은 거의 유사하게 변화할 것으로 예측하고 경제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의 세무조정 사항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접대비와 대손충당금 등과 같이 회계기준과는 달리 세법이 별도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항목의 경우에는 회계상 인정되는 비용이 세무 상 한도금액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결산 상 비용이 증가하여 회계이익이 감소되는 상황 하에서도 과세소득은 감소하지 않게 된다. 예를 들어 결산서상 접대비가 200일 경우 회계이익이 접대비 200만큼 감소하지만 세법상 접대비의 한도액이 100인 경우에는 세무조정 시 한도초과액 100만큼은 손금불산입되어 과세소득은 회계이익보다 100만큼 증가하게 된다.¹⁾ 이와 같이 세법 상 손금 산입액을 규정하고 있는 항목은 그 비용의 증가로 인해 회계이익은 감소시키지만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으로 과세소득은 동일하게 감소시키지 않는 효과가 있게 되며, 회계이익 변화에 따른 과세소득 변화(법인세부담액 변화율)은 비대칭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즉, 회계이익의 감소에 따른 법인세부담액의 감소율은 회계이익의 증가에 따른 법인세부담액의 증가율에 비하여 작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²⁾

이러한 비대칭성은 결국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간의 대칭적인 관계를 예측하는 정보이용자들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익조정이나 조세회피로 잘못 해석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기업과 B기업의 회계이익이 동일한 금액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A기업의 경우에는 세법 상 한도액 때문에 법인세부담액이 적게 감소하고 B기업의 경우에는 A기업보다 법인세부담액이 더 많이 감소했다면 B기업은 조세회피 때문에 법인세부담액이 더 크게 감소하였거나 또는 A기업이 이익조정으로 인해 회계이익이 적게 감소한 것이라고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회계정보와 과세정보를 이용하는 다양한 의사결정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세법 상 한도액 규정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회계이익의 증감에 따른 법인세부담액 변화율이 비대칭적으로 나타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2012년도까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Anderson et al.(2003)의 원가 비대칭성 모형을 준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Anderson et al.(2003)의 원가 비대칭성 모형은 원가행태의 비대칭성의 분석에 국한되지 않고 감사보수와 같은 다른 분야에서도 비대칭성의 검증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Villers et al. 2013 ; 김지홍 외 2012).

1) 구체적인 예시는 <표 1>에서 제시하였다.

2) 개념적으로 회계이익과 대응되는 것은 과세소득이다. 다만 본 연구는 세무보고에서 과세소득보다 궁극적인 결과물인 법인세부담액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정보이용자의 입장에서 공시되는 재무제표에서 세무정보를 추출할 때 법인세부담액을 먼저 계산(법인세비용+이연법인세자산의 증가-이연법인세부채의 증가)하고 계산된 법인세부담액을 통해서 다시 과세소득을 추정(법인세부담액/당해연도 법인세율)하기 때문이다. 법인세부담액 대신 과세소득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분석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다른 수익·비용 항목의 변화 없이 세법 상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는 항목만 증감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회계이익의 증감과 그에 따라 산출된 법인세부담액의 변화를 분석해보면 특히 전기에 관련 항목의 결산 상 금액이 세법 상 한도액과 유사한 경우에 회계이익의 증감에 따른 법인세부담액의 변화율이 비대칭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어 접대비의 세법 상 한도액이 200이라는 가정 하에서 결산 상 접대비가 200에서 150으로 감소하여 회계이익이 50만큼 증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과세소득은 50만큼 증가하여 법인세부담액은 10만큼 증가하지만³⁾ 결산 상 접대비가 200에서 250으로 증가하여 회계이익이 50만큼 감소하는 경우에는 접대비 한도초과액에 대한 손금불산입 50의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과세소득은 감소하지 않고 그에 따라 법인세부담액 역시 감소하지 않게 된다. 반면, 전기에 결산 상 계상된 관련 항목이 세법 상 한도액과 차이가 큰 경우에는 과세소득 계산 시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거나 혹은 전기와 당기의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이 과세소득의 증감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관련 항목의 증감은 법인세부담액 변화율의 비대칭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⁴⁾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법 상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는 항목이 전기에 결산 상 계상된 관련 항목이 세법 상 한도액과 유사하게 계상되어 있는 경우에 회계이익의 증감에 따른 법인세율 비대칭성이 더욱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세법 상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는 항목 중 금액적으로 그 비중이 높고 대표적인 세무조정 항목은 접대비와 대손충당금 이므로 전기에 두 항목이 세법 상 손금산입되는 한도액과 유사하게 계상된 경우 회계이익의 증감에 따른 법인세부담액의 변화율의 비대칭성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차별성 및 공헌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회계기준과 세법에서 서로 다른 비용(또는 손금)을 인식하도록 규정하는 항목들을 이용한 기업의 이익조정이나 조세회피 행위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의 관점에서 벗어나 동 항목들로 인하여 회계보고와 세무보고 간의 관계가 비대칭적인 행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기존에 세무학 연구 분야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을 고찰하고 있다. 둘째, 손금산입 한도액을 정하는 세법 규정으로 인해 야기되는 회계보고와 세무보고 간의 비대칭성은 재무정보이용자들이나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공시되는 회계자료를 통해 세무관련 정보를 유추함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조세정책 관련 담당자나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손금산입 한도액에 대한 세법 규정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숙고하게 하는 기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셋째,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비대칭정도를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이러한 비대칭성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음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이 되는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제Ⅲ장에서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방법 및 연구모형을

3) 법인세율은 20%라고 가정하였다.

4) 보다 구체적인 예는 가설의 <표 2>, <표 3>, <표 4>를 통해서 기술하였다.

제시하고, 제Ⅳ장에서는 실증분석결과를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연구의 결론과 한계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및 가설

1. 선행연구

가. 회계보고와 세무보고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회계보고와 세무보고의 연관성 혹은 그 차이점과 관련된 연구는 중요한 연구주제 중의 하나이다. 미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 회계부정 사건들이 발생한 기업들의 경우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크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회계보고와 세무보고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 Lev and Nissim(2004)과 Hanlon(2005)은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비율이 기업의 이익성장률을 예측할 수 있으며,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이하 “보고이익차이”라고 함)가 이익지속성과 같은 회계이익의 속성을 설명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Hanlon et al.(2005)은 주가관련성을 검증하여 과세소득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해 회계이익이 제공하는 정보 외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국내에서도 국외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보고이익차이 및 과세소득은 정보효과가 있음이 보고되었다(노희천 2009).

한편, 본 연구와 같이 회계기준과 세법 규정 간의 차이점에 주목하여 회계이익의 구성요소인 발생액을 세법과의 정합성이 높은 발생액(book-tax accruals)과 세법과의 정합성이 낮은 발생액(book-only accruals)으로 세분화한 Calegari(2000)는 한계세율이 높아진 기업이 법인세부담을 감소시키면서 회계이익을 높이 보고하기 위하여 세분화된 발생액을 차별적으로 조정하는지 분석하였다. 그는 1986년의 조세개혁법안(TRA86)으로 인해 과세이연 혜택이 사라지고 조세부담이 높아진 기업들이 법인세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세법과의 정합성이 높은 발생액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낮아진 회계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세법과의 정합성이 낮은 발생액은 증가시키는 것을 보고하였다. 국내에서는 오광욱과 정석우(2010)가 국내 세법을 반영하여 발생액을 세법과의 정합성이 높은 발생액과 세법과의 정합성이 낮은 발생액을 각각 비세무조정발생액과 세무조정발생액으로 정의하였다. 비세무조정발생액은 세법에서 회계기준과 동일한 기간에 수익(또는 익금)과 비용(또는 손금)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한 대부분의 수익·비용 항목이며, 세무조정발생액은 대손충당금 등과 같이 세법이 회계기준과 다른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결산 상 계상한 금액이 세무조정을 통해 취소되어 세무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발생액이다. 오광욱과 정석우(2010)는 동 발생액 구성요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계세율과 발생액의 조정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한계세율이 높은 기업은 조세비용 절감을 위해 재량적 비세무조정발생액을 하향 조정하고

재무보고비용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량적 세무조정발생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보고하였다.

한편, 기업의 세무전략의 관점에서 회계보고와 세무보고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도 수행되었는데, 심한택과 권순용(2003)은 세전이익의 크기와 조세감면율 및 유효세율을 분석하여 세전이익이 높을수록 조세감면율은 높지만 유효세율은 차이가 없음을 보임으로서 세전이익에 따른 조세전략의 실행유인에 체계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또한, 윤재원 외(2004)는 세전이익이 증가하는 경우에 비해 세전이익이 감소하는 경우에 세무조사확률이 증가하므로 세전이익과 유효법인세율을 분석함으로써 세전이익이 증가한 경우의 법인세 하향평준화의 정도가 세전이익이 감소한 경우의 법인세 상향평준화정도보다 크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나. 비대칭성에 대한 연구

본 연구에서는 회계이익의 증감에 따른 법인세부담액의 증감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Anderson et al.(2003)의 원가 비대칭성 모형을 준용하였다. Anderson et al.(2003)은 매출이 감소하는 경우와 매출이 증가하는 경우의 판매관리비의 변화율에 대한 회귀계수의 비교를 통해 매출이 감소하는 경우 판매관리비의 변화율이 매출이 증가하는 경우의 판매관리비의 변화율보다 작다는 것을 발견하고 원가 비대칭성(하방경직성)의 존재를 입증하였다. Anderson et al.(2003)의 결과 이후에는 원가의 비대칭성이 나타나는 요인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그 요인으로서 경영자의 전략적 의사결정, 연속적인 매출감소, 전기의 매출변화, 기업의 핵심역량, 기업의 지배구조 등의 다양한 요인이 비대칭적인 원가행태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anker et al. 2006 ; Balakrishnan et al. 2004 ; Chen et al. 2008 ; 이석영 등 2004 ; 구정호 등 2009 ; 장승현과 백태영 2009 ; 정문중 2009 ; 정문종과 이성욱 2009 ; 문호은과 홍철규 2010 ; 송승아 등 2010).

한편, 원가행태의 비대칭성을 법인세부담과 관련된 경영자의 의사결정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 장지인과 정준희(2012)는 법인세율 인하직전연도에 원가행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법인세율 인하직전연도에는 다른 기간보다 매출액 감소율 대비 원가의 감소율이 더 낮게 나타나 원가의 비대칭성의 정도가 큰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경영자가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조세절감의 혜택을 받기 위해 전략적으로 비용을 조기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감사분야에서는 Villers et al. (2013)이 Anderson et al.(2003)의 모형을 이용하여 감사보수의 비대칭적 행태를 검증하였다. 그들은 실제감사보수의 조정이 기업규모, 복잡성 및 감사위험 요인을 고려했을 때 기대되는 감사보수보다 평균적으로 작게 이루어지며, 기대감사보수 증가 시 실제감사보수의 증가에 비해서 기대감사보수 감소 시 실제감사보수의 감소가 작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국내에서는 김지홍 외(2012)가 Anderson et al.(2003)의 모형을 활용하여 감사보수의 비대칭적 행태를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기대감사보수가 감소하는 상황에는 실제감사보수를 민감하게 감소시키는 반면 기대감사보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실제감사보수를 상대적으로 덜 증

가시켜 국내에서는 감사보수가 상방경직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특히, 외국인지분율, 사외이사 비중, 감사위원회의 설치 여부와 같은 지배구조의 역할은 감사보수의 상방경직 현상이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Anderson et al.(2003)의 원가 비대칭 모형은 원가의 행태에 국한되지 않고 세무 및 감사분야에서 관심변수의 비대칭성에 대한 존재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회계이익의 증감에 따른 법인세부담액의 증감이 비대칭적으로 나타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Anderson et al.(2003)의 원가 비대칭 모형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회계보고와 세무보고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에서 언급한 선행연구들과 같이 회계보고와 세무보고의 연관성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회계기준과 세법 규정 간의 차이로 인하여 회계보고와 세무보고 간의 관계가 어떠한 행태로 나타날 수 있는지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회계기준과 세법 규정 간의 차이를 다루는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그로 인한 기업의 이익조정이나 조세회피 행위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벗어나 회계기준과 세법 규정 간의 차이로 인하여 회계보고와 세무보고 간의 관계가 비대칭적인 행태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또한, 주로 원가회계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Anderson et al.(2003)의 원가 비대칭 모형은 세무회계 분야에 사용함으로써 세무회계 연구 방법의 다양성을 증진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을 가지고 있다.

2. 가설

우리나라는 회계기준상 대부분의 수익과 비용 항목을 동일한 기간에 세법상 익금과 손금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산 상 계상된 금액은 세무조정 없이 그대로 과세소득에 반영되고 과세소득을 기본으로 산출된 법인세부담액은 회계이익과 정(+)비례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최원욱 외 2014). 이는 일반적으로 회계이익이 증가하는 경우의 법인세부담액 변화율과 회계이익이 감소하는 경우의 법인세부담액 변화율이 대칭적으로 나타나게 됨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수익과 비용 항목과는 달리 일부 항목의 경우에는 회계기준과 세법이 서로 다른 비용과 손금을 인식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결산 상 계상된 비용을 전액 손금으로 인식하지 않고 세법 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한도액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접대비, 대손충당금 및 감가상각비⁵⁾는 이와 같이 세법 상 규정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만 손금

5) 감가상각비는 대손충당금과 접대비와 같이 세법 상 규정된 한도액의 범위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첫째, 감가상각비의 한도초과액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각 유형자산 별로 세법 상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가 필요한데 이러한 자료는 공시되지 않는 기업의 내부자료이므로 실증 분석이 불가능하다. 둘째, 많은 기업들이 실무적으로 세법 상 감가상각방법과 결산 상 감가상각방법을 일치시키고 있기 때문에(Choi et al. 2009) 접대비나 대손충당금과는 달리 그 한도초과액의 비중과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손충당금과 접대비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항목들로서 동 비용 항목들이 증가하여 회계이익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세법 상 손금으로 부인되는 한도초과액으로 인하여 과세소득이 감소하지 않게 됨에 따라 회계이익의 증감에 따른 법인세부담액의 변화율은 비대칭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부담액 변화율이 비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 <표 1>과 같이 접대비의 한도액이 100인 상황 하에서 회계기준과 세법의 인식 규정이 동일한 항목인 영업수익 항목이 100만큼 증가하는 경우와 세법 상 별도의 손금 한도액이 규정되어 있는 접대비가 100만큼 증가하는 경우를 가정한다. 영업수익이 100 증가하는 경우에는 회계이익이 100만큼 증가함에 따라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과세소득이 100 증가하여 법인세부담액은 20만큼 증가하나, 결산 상 접대비가 100 증가하여 회계이익이 100만큼 감소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정 시 손금 부인되는 한도초과액이 200으로 증가함에 따라 과세소득은 변하지 않고 법인세부담액도 감소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세법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는 항목으로 인하여 회계이익의 증가에 따른 법인세부담액 변화율과 회계이익이 감소하는 경우의 법인세부담액 변화율은 비대칭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회계이익의 증가에 따른 법인세부담액의 증가율에 비하여 회계이익의 감소에 따른 법인세부담액의 감소율이 작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다음과 같이 [가설 1]을 설정하였다.

<표 1> 회계이익의 증감에 따른 법인세부담액의 변화율의 비대칭성(접대비한도 100가정)

구 분 항 목	회계이익의 증가		회계이익의 감소	
	t-1기	t기	t-1기	t기
영업수익	1,000	1,100	1,000	1,000
영업비용				
접대비 ⁶⁾	200	200	200	300
기 타	300	300	300	300
회계이익	500	600	500	400
세무조정	100	100	100	200
과세소득	600	700	600	600
법인세부담액(세율 20%)	120	140	120	120

[가설 1] 회계이익 감소 시 회계이익 감소에 따른 법인세부담액 감소율은 회계이익 증가 시 회계이익 증가에 따른 법인세부담액 증가율보다 작을 것이다.

6)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예를 접대비를 통해 설명하고 있으며 대손충당금의 경우에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한편, 다른 수익·비용 항목의 변화 없이 세법 상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는 항목이 증감하는 경우만을 가정하여 각각의 과세소득과 그에 따라 산출된 법인세부담액을 분석해보면 전기($t-1$ 기)에 관련 항목의 결산 상 금액이 세법 상 한도액과 유사한 경우에는 회계이익의 증감에 따른 법인세부담액의 변화율이 특히 비대칭적으로 나타나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 <표 2>와 같이 접대비의 세법 상 한도액이 200이라는 가정 하에 결산 상 접대비가 200에서 150으로 감소하여 회계이익이 50만큼 증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과세소득은 50 증가하여 법인세부담액은 10만큼 증가한다. 반면, 결산 상 접대비가 200에서 250으로 증가하여 회계이익이 50만큼 감소하는 경우에는 접대비 한도초과액에 대한 손금불산입 50의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과세소득은 감소하지 않고 그에 따라 법인세부담액 역시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⁷⁾

<표 2> 회계이익의 증감에 따른 법인세부담액의 변화율의 비대칭성(접대비한도 200가정)

구 분 항 목	회계이익의 증가		회계이익의 감소	
	t-1기	t기	t-1기	t기
영업수익	1,000	1,000	1,000	1,000
영업비용				
접대비	200	150	200	250
기 타	300	300	300	300
회계이익	500	550	500	450
세무조정	—	—	—	50
과세소득	500	550	500	500
법인세부담액(세율 20%)	100	110	100	100

그러나 위의 예와는 달리 다음 <표 3>과 같이 접대비의 세법 상 한도액이 100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는 결산 상 접대비가 200에서 150으로 감소하여 회계이익이 50만큼 증가하게 되면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역시 50만큼 감소하여 과세소득 및 법인세부담액은 증가하지 않는다. 또한, 결산 상 접대비가 200에서 250으로 증가하여 회계이익이 50만큼 감소하는 경우에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역시 50만큼 증가하여 과세소득 및 법인세부담액은 감소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기($t-1$ 기)에 결산 상 계상된 관련 항목이 세법 상 한도액과 차이가 큰 경우에는 관련 항목의 증감은 법인세부담액 변화율의 비대칭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7) 이론적으로 비대칭성이 나타나는 경우를 극명하게 보이게 하기 위하여 세법 상 한도액이 전기와 당기에 동일하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실증 분석에서도 세법 상 한도액이 전기와 당기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임을 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한계점이 존재한다.

〈표 3〉 회계이익의 증감에 따른 법인세부담액의 변화율의 비대칭성(접대비한도 100가정)

구 분 항 목	회계이익의 증가		회계이익의 감소	
	t-1기	t기	t-1기	t기
영업수익	1,000	1,000	1,000	1,000
영업비용				
접대비	200	150	200	250
기 타	300	300	300	300
회계이익	500	550	500	450
세무조정	100	50	100	150
과세소득	600	600	600	600
법인세부담액(세율 20%)	120	120	120	120

또한 다음 <표 4>와 같이 접대비의 세법 상 한도액을 300으로 가정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결산 상 접대비가 200에서 150으로 감소하여 회계이익이 50만큼 증가하게 되면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과세소득은 50이 증가하고, 결산 상 접대비가 200에서 250으로 증가하여 회계이익이 50만큼 감소하게 되면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과세소득은 50만큼 감소하므로 법인세부담액 변화율의 비대칭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표 4〉 회계이익의 증감에 따른 법인세부담액의 변화율의 비대칭성(접대비한도 300가정)

구 분 항 목	회계이익의 증가		회계이익의 감소	
	t-1기	t기	t-1기	t기
영업수익	1,000	1,000	1,000	1,000
영업비용				
접대비	200	150	200	250
기 타	300	300	300	300
회계이익	500	550	500	450
세무조정	—	—	—	—
과세소득	500	550	500	450
법인세부담액(세율 20%)	100	110	100	9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법 상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는 항목이 전기(t-1기)에 결산 상 계상된 관련 항목이 세법 상 한도액과 유사하게 계상되어 있는 경우, 회계이익의 증감에 따른 법인

세부담액 변화율의 비대칭성이 더욱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세법 상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는 항목 중 금액적으로 그 비중이 높고 대표적인 세무조정 항목은 대손충당금과 접대비이므로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전기 비용항목이 세법 상 한도액과 유사하게 계상된 경우 회계이익 변화에 따른 법인세부담액 변화율의 비대칭성은 더욱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2-1] 전기 대손충당금이 세법 상 한도액과 유사하게 계상된 경우 회계이익 변화에 따른 법인세부담액 변화율의 비대칭성은 더욱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2-2] 전기 접대비가 세법 상 한도액과 유사하게 계상된 경우 회계이익 변화에 따른 법인세부담액 변화율의 비대칭성은 더욱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III. 연구 방법

1. 표본 선정

본 연구의 표본은 2001년부터 2012년도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기업을 선정하였다. 분석대상 기업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업을 제외한 12월 결산 상장법인을 선정하였으며, 연구모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TS2000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재무자료를 추출할 수 있는 기업만을 포함하였다. 또한, 자본잠식 기업과 회계이익 및 법인세부담액이 0이거나 음(-)인 기업의 경우에는 표본에서 제외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이용된 기업-연도 수는 3,518개이다.

〈표 5〉 표본 선정

표본 선정 과정	표본 수
2001년부터 2012년까지 금융업을 제외한 상장기업으로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재무자료를 추출할 수 있는 기업	7,287
차감 :	
12월 결산이 아닌 기업	(443)
자본잠식 기업	(367)
회계이익 및 과세소득이 0이거나 음(-)인 기업	(2,959)
최종 기업-연도 수	3,518

2.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세법 상 손금산입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는 항목들로 인하여 회계이익의 증감에 따른 법인세부담액의 변화율이 비대칭적으로 나타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Anderson et al.(2003)이 원가행태의 비대칭성을 측정하고자 사용한 다음의 모형 (1)을 활용하였다.

$$\log\left[\frac{COST_{i,t}}{COST_{i,t-1}}\right] = \beta_0 + \beta_1 \log\left[\frac{SALES_{i,t}}{SALES_{i,t-1}}\right] + \beta_2 Decrease Dummy_{i,t} \times \log\left[\frac{SALES_{i,t}}{SALES_{i,t-1}}\right] + \epsilon_{i,t} \quad (1)$$

$COST_{i,t}$ = i기업의 t기 판매관리비

$SALES_{i,t}$ = i기업의 t기 매출액

$Decrease Dummy_{i,t}$ = t기의 매출액이 t-1기보다 작으면 1, 아니면 0

모형(1)에서 β_2 은 기업의 매출액이 전기에 비해 증가한 경우 매출액 변화에 따른 판매관리비의 변화율을 의미하는 계수이며, $(\beta_2 + \beta_3)$ 는 매출액이 감소하는 경우 매출액 변화에 따른 판매관리비의 변화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판매관리비가 매출액의 변화에 비례해 대칭적으로 변화한다면 β_3 는 0의 값을 가지며, β_3 가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진다면 원가의 하방경직성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Anderson et al.(2003)은 β_3 가 유의한 음(-)의 값을 갖는지 분석함으로써 원가의 비대칭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과 관련된 법인세부담액의 비대칭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Anderson et al.(2003)의 모형을 활용하여 다음 모형(2)을 설정하였다. 모형(2)에서 회귀계수 β_2 는 회계이익이 전기에 비해 증가한 경우 회계이익의 변화에 따른 법인세부담액의 변화율을 의미하는 계수이며, $(\beta_2 + \beta_3)$ 은 회계이익이 감소하는 경우 회계이익 변화에 따른 법인세부담액의 변화율을 의미한다. 여기서 β_3 가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진다면 법인세부담액의 하방경직성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구체적으로는 회계이익의 증가에 따른 법인세부담액의 증가율에 비하여 회계이익의 감소에 따른 법인세부담액의 감소율이 작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또한, 기업 별 특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기업규모(SIZE), 부채비율(LEV), 수익성(ROA)을 반영하는 변수를 포함하였으며, 매출액이나 매출원가의 증감으로 인한 법인세부담액의 변화를 통제하기 위하여 매출총이익(GROSS)의 변화변수를 모형(2)에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연도별 효과와 산업별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연도더미(YD)와 산업더미(ID)를 모형에 추가하였다.

$$\ln\left[\frac{TAX_{i,t}}{TAX_{i,t-1}}\right] = \beta_0 + \beta_1 DEC_{i,t} + \beta_2 \ln\left[\frac{EBT_{i,t}}{EBT_{i,t-1}}\right] + \beta_3 \ln\left[\frac{EBT_{i,t}}{EBT_{i,t-1}}\right] \times DEC_{i,t} + \beta_4 \ln SIZE_{i,t} \\ + \beta_5 \ln LEV_{i,t} + \beta_6 \ln ROA_{i,t} + \beta_7 \left[\frac{GROSS_{i,t}}{GROSS_{i,t-1}}\right] + \beta_9 YR + \beta_{10} ID + \varepsilon_{i,t} \quad (2)$$

$TAX_{i,t}$ = i기업의 t기 법인세부담액, 법인세부담액=법인세비용+(당기 이연법인세자산
- 전기 이연법인세자산)-(당기 이연법인세부채 - 전기 이연법인세부채)

$EBT_{i,t}$ = i기업의 t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DEC_{i,t}$ = t기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t-1기보다 작으면 1, 아니면 0

$SIZE_{i,t}$ = i기업의 t기 총자산

$LEV_{i,t}$ = i기업의 t기 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ROA_{i,t}$ = i기업의 t기 총자산순이익률(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총자산)

$GROSS_{i,t}$ = i기업의 t기 매출총이익

YR = 연도더미

ID = 산업더미

다음 모형(3)과 모형(4)는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인 전기 대손충당금 및 접대비가 세법 상 손금산입되는 한도액과 유사하게 계상된 경우 회계이익에 따른 법인세부담액 변화율의 비대칭성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지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 대손충당금(또는 접대비)과 세법 상 한도액의 차이를 총자산으로 표준화한 값이 0.0001보다 작은 경우를 세법 상 한도액과 유사하게 계상된 것으로 간주하고 ALLOW(또는 ENT) 더미변수를 설정하였다.⁸⁾ 모형(3)에서 $(\beta_2 + \beta_3)$ 는 회계이익이 감소하는 경우 법인세부담액 변화율을 의미하며, 전기의 결산 상 대손충당금이 세법 상 한도액과 유사하게 계상된 경우 회계이익의 감소에 따른 법인세부담액 변화율은 $(\beta_2 + \beta_3 + \beta_6 + \beta_7)$ 이 된다. 즉, $(\beta_6 + \beta_7)$ 이 음(-)의 값을 가질 경우 회계이익의 감소에 따른 법인세 부담액 감소율이 낮아져 [가설 2-1]을 지지하게 된다. 따라서 β_6 가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진다면 β_7 과 $(\beta_6 + \beta_7)$ 은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8) 0.0001은 <표 6>의 기술통계량에서 ALLOWDIFF_{t-1}와 ENTDIFF_{t-1}의 평균 및 중위수보다 작으면서 그 기준 값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적절한 표본 수가 나오는지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하지만 0.0001이라는 값은 주관적일 수 있으므로 추가분석에서는 그 기준 값을 달리하여 0.00005 또는 0.00015을 기준으로 동일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결산 상 금액과 세법 상 한도액과의 차이가 0.00005보다 작은 경우에는 주요 분석 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그 차이가 0.00015보다 작은 경우에는 $(\beta_6 + \beta_7)$ 의 값이 음(-)이지만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산 상 금액과 세법 상 한도액의 차이가 작을수록 법인세부담액의 비대칭성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begin{aligned}
\ln\left[\frac{TAX_{i,t}}{TAX_{i,t-1}}\right] = & \beta_0 + \beta_1 DEC_{i,t} + \beta_2 \ln\left[\frac{EBT_{i,t}}{EBT_{i,t-1}}\right] + \beta_3 \ln\left[\frac{EBT_{i,t}}{EBT_{i,t-1}}\right] \times DEC_{i,t} + \beta_4 ALLOW_{i,t-1} \\
& + \beta_5 ALLOW_{i,t-1} \times DEC_{i,t} + \beta_6 \ln\left[\frac{EBT_{i,t}}{EBT_{i,t-1}}\right] \times ALLOW_{i,t-1} \\
& + \beta_7 \ln\left[\frac{EBT_{i,t}}{EBT_{i,t-1}}\right] \times ALLOW_{i,t-1} \times DEC_{i,t} + \beta_8 \ln SIZE_{i,t} + \beta_9 \ln LEV_{i,t} \\
& + \beta_{10} \ln ROA_{i,t} + \beta_{11} \left[\frac{GROSS_{i,t}}{GROSS_{i,t-1}}\right] + \beta_{12} YR + \beta_{13} ID + \varepsilon_{i,t} \quad (3)
\end{aligned}$$

$ALLOW_{i,t-1}$ = i기업의 t-1기의 (매출채권, 미수금, 대여금 관련 대손충당금-세법 상 대손충당금 한도액/총자산) < 0.0001인 경우 1, 아니면 0
 세법 상 대손충당금 한도액=(매출채권+미수금+대여금)의 1%⁹⁾

모형(4)에도 마찬가지로 ($\beta_2 + \beta_3$)는 회계이익이 감소하는 경우 법인세부담액 변화율을 의미하며, 전기의 결산 상 접대비가 세법 상 한도액과 유사하게 계상된 경우 회계이익의 감소에 따른 법인세부담액 변화율은 ($\beta_2 + \beta_3 + \beta_6 + \beta_7$)이 된다. 즉, ($\beta_6 + \beta_7$)이 음(-)의 값을 가질 경우 회계이익의 감소에 따른 법인세 부담액 감소율이 낮아져 [가설 2-2]를 지지하게 된다. 따라서 β_6 가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진다면 β_7 과 ($\beta_6 + \beta_7$)은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begin{aligned}
\ln\left[\frac{TAX_{i,t}}{TAX_{i,t-1}}\right] = & \beta_0 + \beta_1 DEC_{i,t} + \beta_2 \ln\left[\frac{EBT_{i,t}}{EBT_{i,t-1}}\right] + \beta_3 \ln\left[\frac{EBT_{i,t}}{EBT_{i,t-1}}\right] \times DEC_{i,t} + \beta_4 ENT_{i,t-1} \\
& + \beta_5 ENT_{i,t-1} \times DEC_{i,t} + \beta_6 \ln\left[\frac{EBT_{i,t}}{EBT_{i,t-1}}\right] \times ENT_{i,t-1} \\
& + \beta_7 \ln\left[\frac{EBT_{i,t}}{EBT_{i,t-1}}\right] \times ENT_{i,t-1} \times DEC_{i,t} + \beta_8 \ln SIZE_{i,t} + \beta_9 \ln LEV_{i,t} \\
& + \beta_{10} \ln ROA_{i,t} + \beta_{11} \left[\frac{GROSS_{i,t}}{GROSS_{i,t-1}}\right] + \beta_{12} YR + \beta_{13} ID + \varepsilon_{i,t} \quad (4)
\end{aligned}$$

9)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은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산정하지만 세법은 조세수입확보를 위하여 손금으로 인정되는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다. 비금융기업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당해 사업연도 대손금×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잔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한도액을 초과하여 결산 상 계상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하지만 기업의 내부자료인 당해 사업연도 대손금은 그 자료입수에 제약이 있으며 공시된 재무제표 자료로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법 상 한도액으로 간주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2013년

ENT_{it-1} = i 기업의 $t-1$ 기의 ($|$ 접대비 $|^{10}$) - 세법 상 접대비 한도액 / 총자산) < 0.0001인 경우 1,
아니면 0

세법 상 접대비 한도액 = 1,200만원(중소기업 1,800만원) + ② + ③

① 총수입금액 × 적용률*

② (총수입금액 - 특수관계자거래의 수입금액) × 적용률

③ (① - ②) × 20/100

* 적용률

구 분		수입금액 적용률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분	2/1,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분	1/1,000
	500억원 초과분	0.3/1,000

IV. 분석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표 6>은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사용된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제시하고 있다. 법인세부담액 변화율에 로그를 취한 값의 평균(중위수)은 0.0989(0.0737)이며, 회계이익의 변화율에 로그를 취한 값의 평균(중위수)은 0.0409(0.0649)이다. DEC 더미변수의 평균은 0.4426으로서 전체표본의 약 44%가 전기에 비하여 회계이익이 감소하였음을 보이고 있다. 결산 상 계상된 대손충당금과 세법 상 대손충당금 한도액과의 차이를 표준화한 값의 평균(중위수)은 0.0094(0.0027)이며, 결산 상 접대비와 세법 상 접대비 한도액과의 차이를 표준화한 값의 평균(중위수)은 0.0015(0.0004)이다. 이는 접대비가 대손충당금에 비해서 결산 상 계상된 금액과 세법 상 한도액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ALLOW 더미변수의 평균은 0.1120이며 ENT 더미변수의 평균은 0.2115으로서 대손충당금과 접대비가 세법 상 한도액과 유사하게 계상된 경우는 각각 전체표본의 약 11%와 21%에 해당함을 보이고 있다.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한도액의 경우 채권잔액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1로 낮아졌으나 본 연구의 표본은 금융업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세법 상 한도액 규정의 변동이 본 연구 분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10) 세무 상 접대비는 손익계산서에 공시된 접대비 뿐만 아니라 복리후생비나 회의비에 포함된 접대비 및 제조원가명세서와 연구개발비명세서 등에 반영된 접대비를 모두 포함한 접대비를 의미하지만 연구 자료의 제약 상 공시자료인 손익계산서 상의 접대비만을 세무 상 접대비로 추정하였다.

〈표 6〉 기술통계량

Variables	Mean	Median	SD	MIN	Max
$\ln(\text{TAX}_t/\text{TAX}_{t-1})$	0.0989	0.0737	1.2944	-12.8867	18.6952
$\ln(\text{EBT}_t/\text{EBT}_{t-1})$	0.0409	0.0649	0.7913	-5.9152	5.1706
DEC_t	0.4426	0.0000	0.4968	0.0000	1.0000
ALLOWDIFF_{t-1}	0.0094	0.0027	0.0195	0.0000	0.3166
ENTDIFF_{t-1}	0.0015	0.0004	0.0036	0.0000	0.0634
ALLOW_{t-1}	0.1120	0.0000	0.3154	0.0000	1.0000
ENT_{t-1}	0.2115	0.0000	0.4084	0.0000	1.0000
$\ln(\text{ASSET}_t)$	19.6562	19.3554	1.4949	16.2010	25.6156
$\ln(\text{LEV}_t)$	-1.0229	-0.8844	0.5892	-7.5761	-0.0601
$\ln(\text{ROA}_t)$	-2.7374	-2.5752	0.8947	-8.8332	-0.6665
$\ln(\text{GROSS}_t/\text{GROSS}_{t-1})$	0.0626	0.0644	0.3252	-3.5321	2.8754

주) 변수의 정의

$\ln(\text{TAX}_t/\text{TAX}_{t-1})$	= $\ln(\text{법인세부담액}_t/\text{법인세부담액}_{t-1})$
$\ln(\text{EBT}_t/\text{EBT}_{t-1})$	= $\ln(\text{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_t/\text{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_{t-1})$
DEC_t	= t 기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t-1$ 기보다 작으면 1, 아니면 0
ALLOWDIFF_{t-1}	= $ \text{매출채권} \cdot \text{미수금} \cdot \text{대여금 관련 대손충당금}_{t-1} - \text{세법 상 대손충당금 한도액}_{t-1} / \text{총자산}_{t-1}$
ENTDIFF_{t-1}	= $ \text{접대비}_{t-1} - \text{세법 상 접대비 한도액}_{t-1} / \text{총자산}_{t-1}$
ALLOW_{t-1}	= $\text{ALLOWDIFF}_{t-1} < 0.0001$ 인 경우 1, 아니면 0
ENT_{t-1}	= $\text{ENTDIFF}_{t-1} < 0.0001$ 인 경우 1, 아니면 0
$\ln(\text{ASSET}_t)$	= $\ln(\text{ASSET}_t)$
$\ln(\text{LEV}_t)$	= $\ln(\text{LEV}_t)$
$\ln(\text{ROA}_t)$	= $\ln(\text{ROA}_t)$
$\ln(\text{GROSS}_t/\text{GROSS}_{t-1})$	= $\ln(\text{매출총이익}_t/\text{매출총이익}_{t-1})$

<표 7>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표이다. 법인세부담액의 변화율은 회계이익의 변화율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회계이익의 감소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통제변수인 부채비율 및 총자산수익률과 매출총이익의 변화율은 법인세부담액 변화율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표 7〉 주요변수들 간 상관관계

	$\ln(\text{TAX}_t/\text{TAX}_{t-1})$	$\ln(\text{EBT}_t/\text{EBT}_{t-1})$	DEC_t	ALLOW_{t-1}	ENT_{t-1}	$\ln(\text{ASSET}_t)$	$\ln(\text{LEV}_t)$	$\ln(\text{ROA}_t)$	$\ln(\text{GROSS}_t/\text{GROSS}_{t-1})$
$\ln(\text{TAX}_t/\text{TAX}_{t-1})$	1.0000	0.3305 <.0001	-0.2645 <.0001	-0.0174 0.3027	-0.0053 0.7536	0.0238 0.1580	0.0692 <.0001	0.1669 <.0001	0.2851 <.0001
$\ln(\text{EBT}_t/\text{EBT}_{t-1})$		1.0000	-0.6613 <.0001	-0.0157 0.3522	-0.0054 0.7476	0.0071 0.6724	0.0723 <.0001	0.5008 <.0001	0.4692 <.0001
DEC_t			1.0000	0.0024 0.8867	0.0178 0.2905	-0.0212 0.2081	-0.0683 <.0001	-0.3770 <.0001	-0.3958 <.0001
ALLOW_{t-1}				1.0000	-0.0816 <.0001	-0.1004 <.0001	0.1353 <.0001	-0.0553 0.0010	0.0165 0.3291
ENT_{t-1}					1.0000	-0.2261 <.0001	-0.0030 0.8577	0.0544 0.0012	0.0141 0.4041
$\ln(\text{ASSET}_t)$						1.0000	-0.1990 <.0001	0.0375 0.0262	-0.0327 0.0529
$\ln(\text{LEV}_t)$							1.0000	-0.0117 0.4893	-0.0069 0.6831
$\ln(\text{ROA}_t)$								1.0000	-0.0020 0.9059
$\ln(\text{GROSS}_t/\text{GROSS}_{t-1})$									1.0000

1) 변수의 정의는 <표 6> 참조

2) 각 셀의 첫째 줄은 피어슨 상관계수, 둘째 줄은 p-value를 나타냄

2. 회귀분석

<표 8>은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모형(2)을 사용하여 회계이익에 따른 법인세부담액의 변화율이 비대칭적으로 나타나지는 검증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회계이익이 증가하는 경우 회계이익의 변화에 따른 법인세부담액의 변화율을 의미하는 회귀계수 β_2 는 0.491로서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고 있으며, 회계이익 감소 시 법인세부담액의 변화율과 관련된 회귀계수 β_3 의 경우 -0.279로서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이고 있다. 즉, 회계이익이 감소하는 경우 회계이익 변화에 대한 법인세부담액의 변화율은 0.212이며, 회계이익의 감소에 따른 법인세부담액의 감소율이 회계이익의 증가에 따른 법인세부담액의 증가율에 비해 작으므로 [가설 1]을 지지하고 있다.

<표 8> 법인세부담액 변화율의 비대칭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가설 1)

Variables	ln(TAX _t /TAX _{t-1})		
	Estimate	t-stat	p-value
Intercept (β_0)	-0.543	-1.63	0.104
DEC (β_1)	-0.135	-2.44 **	0.015
ln(EBT _t /EBT _{t-1}) (β_2)	0.491	9.87 ***	<.0001
DEC*ln(EBT _t /EBT _{t-1}) (β_3)	-0.279	-3.60 ***	0.000
ln(ASSET) (β_4)	0.023	1.59	0.111
ln(LEV) (β_5)	0.036	0.94	0.346
ln(ROA) (β_6)	0.040	1.31	0.199
ln(GROSS) (β_7)	0.591	8.13 ***	<.0001
YR		Included	
IND		Included	
F-Value		21.03 ***	
R ² -Adj		0.1459	
N		3,518	

1) 변수의 정의는 <표 6> 참조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적임을 의미함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간에는 비대칭성이 존재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회계이익의 증감과 과세소득의 증감은 상이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회계이익이 과세소득을 설명할 수 있는 정도는 약화됨에 따라 정보이용자는 과세소득에 대한 정보를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의 증가로 기업이 이익조정 혹

은 조세회피 등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정보이용자는 이를 모니터링하지 못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기업의 이익조정 혹은 조세회피 등의 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최대한 가능한 세법의 운영 범위 내에서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대칭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접대비 혹은 대손충당금 등의 세법상 한도액을 설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비대칭성이 증가하게 됨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표 9>의 모형(3)을 사용하여 전기 대손충당금이 세법 상 손금 산입되는 한도액과 유사하게 계상된 경우 회계이익에 따른 법인세부담액 변화율의 비대칭성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지 검증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표 9> 대손충당금 및 접대비가 각각 세법 상 손금 산입되는 한도액과 유사하게 계상된 경우
법인세부담액 변화율의 비대칭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가설 2)

Variables	대손충당금 Model (3)			접대비 Model (4)		
	Estimate	t-stat	p-value	Estimate	t-stat	p-value
Intercept (β_0)	-0.543	-1.63	0.104	-0.593	-1.72*	0.086
DEC (β_1)	-0.125	-2.15**	0.032	-0.130	-2.09**	0.037
$\ln(\text{EBT}_t/\text{EBT}_{t-1})$ (β_2)	0.458	8.84***	<.0001	0.449	7.94***	<.0001
DEC* $\ln(\text{EBT}_t/\text{EBT}_{t-1})$ (β_3)	-0.217	-2.70***	0.007	-0.186	-2.16**	0.031
ALLOW (β_4)	-0.179	-1.50	0.133			
ALLOW*DEC (β_5)	-0.039	-0.22	0.823			
$\ln(\text{EBT}_t/\text{EBT}_{t-1})$ *ALLOW (β_6)	0.388	2.20**	0.028			
$\ln(\text{EBT}_t/\text{EBT}_{t-1})$ *ALLOW*DEC (β_7)	-0.691	-2.94***	0.003			
ENT (β_8)				-0.146	-1.60	0.109
ENT*DEC (β_9)				-0.020	-0.15	0.880
$\ln(\text{EBT}_t/\text{EBT}_{t-1})$ *ENT (β_{10})				0.186	1.65	0.100
$\ln(\text{EBT}_t/\text{EBT}_{t-1})$ *ENT*DEC (β_{11})				-0.416	-2.56**	0.011
$\ln(\text{ASSET})$ (β_{12})	0.024	1.64	0.100	0.027	1.78*	0.074
$\ln(\text{LEV})$ (β_{13})	0.032	0.83	0.407	0.034	0.91	0.364
$\ln(\text{ROA})$ (β_{14})	0.042	1.35	0.178	0.040	1.30	0.194
$\ln(\text{GROSS})$ (β_{15})	0.606	8.31***	<.0001	0.591	8.14***	<.0001
$\beta_6 + \beta_7 = 0$	F=3.84* (p-value=0.0502)			F=3.89** (p-value=0.0485)		
YR	Included			Included		
IND	Included			Included		
F-Value	18.84***			18.79***		
R ² -Adj	0.1471			0.1467		
N	3518			3518		

1) 변수의 정의는 <표 6> 참조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적임을 의미함

회계이익이 감소할 때 전기 대손충당금이 세법 상 한도액과 유사하게 계상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간의 법인세부담액 변화율의 차이는 회귀계수 ($\beta_6 + \beta_7$)이며, 그 값은 -0.303 으로서 10%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가설 2-1]에서 예측한 바와 같이 전기의 대손충당금이 세법 상 한도액과 유사하게 계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회계이익의 감소에 따른 법인세부담액 변화율이 더욱 작다는 것을 의미함으로서 비대칭성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이고 있다.

또한, 모형(4)을 사용하여 전기 접대비가 세법 상 손금 산입되는 한도액과 유사하게 계상된 경우 회계이익에 따른 법인세부담액 변화율의 비대칭성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지 분석한 결과이다. 회계이익이 감소할 때 전기 접대비가 세법 상 한도액과 유사하게 계상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간의 법인세부담액 변화율의 차이를 의미하는 회귀계수 ($\beta_6 + \beta_7$)은 -0.23 으로서 5%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기의 접대비가 세법 상 한도액과 유사하게 계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회계이익의 감소에 따른 법인세부담액 변화율의 더욱 작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가설 2-2]를 실증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3. 추가분석

본 절에서는 주요 분석 결과의 강건성을 위하여 추가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주요 분석에서는 전기 대손충당금과 접대비가 각각 세법 상 한도액과 유사하게 계상된 경우 회계이익 따른 법인세부담액 변화율의 비대칭성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지 검증하였으나, 추가분석에서는 두 항목 모두 세법 상 한도액과 유사하게 계상된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를 보이는지 검증하였다. <표 10>은 전기 대손충당금과 접대비가 모두 세법 상 손금 산입되는 한도액과 유사하게 계상된 경우는 1, 아니면 0인 LIMIT 더미변수를 사용하여 회계이익에 따른 법인세부담액 변화율의 비대칭성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지 분석한 결과이다. 회계이익이 감소할 때 두 항목이 세법 상 한도액과 유사하게 계상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간의 법인세부담액 변화율의 차이를 의미하는 회귀계수 ($\beta_6 + \beta_7$)은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두 항목이 모두 세법 상 한도액과 유사하게 계상되어 있는 경우에도 각각의 항목을 각각 고려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계이익에 따른 법인세부담액 변화율의 비대칭성이 더욱 강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표 10〉 대손충당금과 접대비가 모두 세법 상 손금 산입되는 한도액과 유사하게 계상된 경우
법인세부담액 변화율의 비대칭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Variables	ln(TAX _t / TAX _{t-1})		
	Estimate	t-stat	p-value
Intercept (β_0)	-0.554	-1.65	0.100
DEC (β_1)	-0.126	-2.25**	0.025
ln(EBT _t /EBT _{t-1}) (β_2)	0.474	9.45***	<.0001
DEC*ln(EBT _t /EBT _{t-1}) (β_3)	-0.231	-2.97***	0.003
LIMIT (β_4)	-0.463	-2.13**	0.033
LIMIT*DEC (β_5)	-0.145	-0.48	0.634
ln(EBT _t /EBT _{t-1})*LIMIT (β_6)	0.617	1.63	0.104
ln(EBT _t /EBT _{t-1})*LIMIT*DEC (β_7)	-1.884	-3.93***	<.0001
ln(ASSET) (β_8)	0.024	1.68*	0.094
ln(LEV) (β_9)	0.045	1.16	0.245
ln(ROA) (β_{10})	0.042	1.37	0.172
ln(GROSS) (β_{11})	0.616	8.48***	<.0001
$\beta_6 + \beta_7 = 0$	F = 18.67*** (p-value <.0001)		
YR	Included		
IND	Included		
F-Value	19.35***		
R ² -Adj	0.1507		
N	3518		

1) LIMIT_{t-1}=ALLOWDIFF_{t-1}<0.0001와 ENTDIFF_{t-1}<0.0001인 경우 1, 아니면 0
다른 변수의 정의는 <표 6> 참조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적임을 의미함

본 연구의 주요 분석에서는 전기 대손충당금(또는 접대비)과 세법 상 한도액의 차이를 총자산으로 표준화한 값이 0.0001보다 작은 경우를 세법 상 한도액과 유사하게 계상된 것으로 정의하고 ALLOW(또는 ENT) 더미변수를 설정하였다. 하지만 0.0001이라는 값은 주관적일 수 있으므로 추가분석에서는 그 기준을 다른 값으로 대체하여 동일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결산 상 금액과 세법 상 한도액의 차이의 표준화된 값이 0.0001보다 작은 경우를 검증하기 위하여 그 기준 값을 0.00005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표 11>의 Model (3)은 결산 상 대손충당금과 세법 상 한도액과의 차이가 0.00005보다 작은 경우에 1, 아닌 경우 0인 ALLOW 더미변수를 이용하여 모형(3)을 회귀 분석한 결과이며, Model (4)는 결산 상 접대비와 세법 상 한도액과의 차이가 0.00005보다 작은 경우에 1, 아닌 경우 0인 ENT 더미변수를 이용하여 모형(4)을 회귀 분석한 결

과이다. 분석 결과 각각의 $(\beta_6 + \beta_7)$ 은 모두 5%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주요 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전기의 결산상 금액이 세법 상 한도액과 유사하게 계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회계이익의 감소에 따른 법인세부담액 변화율의 더욱 작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11> 대손충당금 또는 접대비가 각각 세법 상 손금 산입되는 한도액과 유사하게 계상된 경우 법인세부담액 변화율의 비대칭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한도액과의 차이가 0.00005보다 작은 경우)

Variables	대손충당금 Model (3)			접대비 Model (4)		
	Estimate	t-stat	p-value	Estimate	t-stat	p-value
Intercept (β_0)	-0.502	-1.51	0.132	-0.582	-1.71*	0.087
DEC (β_1)	-0.139	-2.45**	0.015	-0.103	-1.73*	0.084
$\ln(\text{EBT}_t/\text{EBT}_{t-1})$ (β_2)	0.453	8.94***	<.0001	0.508	9.33***	<.0001
DEC* $\ln(\text{EBT}_t/\text{EBT}_{t-1})$ (β_3)	-0.215	-2.73***	0.006	-0.243	-2.90***	0.004
ALLOW (β_4)	-0.403	-2.68***	0.007			
ALLOW*DEC (β_5)	0.170	0.76	0.450			
$\ln(\text{EBT}_t/\text{EBT}_{t-1})$ *ALLOW (β_6)	0.898	3.56***	0.000			
$\ln(\text{EBT}_t/\text{EBT}_{t-1})$ *ALLOW*DEC (β_7)	-1.376	-4.30***	<.0001			
ENT (β_8)				-0.001	-0.01	0.989
ENT*DEC (β_9)				-0.176	-1.16	0.244
$\ln(\text{EBT}_t/\text{EBT}_{t-1})$ *ENT (β_{10})				-0.093	-0.73	0.466
$\ln(\text{EBT}_t/\text{EBT}_{t-1})$ *ENT*DEC (β_{11})				-0.219	-1.21	0.226
$\ln(\text{ASSET})$ (β_{12})	0.022	1.55	0.122	0.025	1.69*	0.092
$\ln(\text{LEV})$ (β_{13})	0.037	0.96	0.335	0.038	1.00	0.316
$\ln(\text{ROA})$ (β_{14})	0.041	1.34	0.180	0.041	1.34	0.179
$\ln(\text{GROSS})$ (β_{15})	0.616	8.46***	<.0001	0.594	8.18***	<.0001
$\beta_6 + \beta_7 = 0$	F=5.90** (p-value=0.0152)			F=6.00** (p-value=0.0143)		
YR	Included			Included		
IND	Included			Included		
F-Value	19.19***			18.77***		
R ² -Adj	0.1495			0.1466		
N	3518			3518		

- 1) $\text{ALLOW}_{t-1} = \text{ALLOWDIFF}_{t-1} < 0.00005$ 인 경우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text{ENT}_{t-1} = \text{ENTDIFF}_{t-1} < 0.00005$ 인 경우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다른 변수의 정의는 <표 6> 참조
-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적임을 의미함

이번에는 결산 상 금액과 세법 상 한도액의 차이의 표준화된 값이 0.0001보다 큰 경우를 분석하기 위하여 그 기준 값을 0.00015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표 12>의 Model (3)은 결산 상 대손충당금과 세법 상 한도액과의 차이의 표준화된 값이 0.00015보다 작은 경우에 1, 아닌 경우 0인 ALLOW 더미변수를 이용하여 모형(3)을 회귀 분석한 결과이며, Model (4)는 결산 상 접대비와 세법 상 한도액과의 차이의 표준화된 값이 0.00015보다 작은 경우에 1, 아닌 경우 0인 ENT 더미변수를 이용하여 회귀 분석한 결과이다.

<표 12> 대손충당금 또는 접대비가 각각 세법 상 손금 산입되는 한도액과 유사하게 계상된 경우 법인세부담액 변화율의 비대칭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한도액과의 차이가 0.00015보다 작은 경우)

Variables	대손충당금 Model (3)			접대비 Model (4)		
	Estimate	t-stat	p-value	Estimate	t-stat	p-value
Intercept (β_0)	-0.554	-1.66*	0.097	-0.598	-1.73*	0.084
DEC (β_1)	-0.137	-2.30**	0.022	-0.139	-2.16**	0.031
$\ln(\text{EBT}_t/\text{EBT}_{t-1})$ (β_2)	0.459	8.76***	<.0001	0.435	7.45***	<.0001
$\text{DEC} \cdot \ln(\text{EBT}_t/\text{EBT}_{t-1})$ (β_3)	-0.225	-2.75***	0.006	-0.190	-2.14**	0.033
ALLOW (β_4)	-0.190	-1.78*	0.074			
ALLOW*DEC (β_5)	0.037	0.24	0.811			
$\ln(\text{EBT}_t/\text{EBT}_{t-1}) \cdot \text{ALLOW}$ (β_6)	0.290	1.83*	0.068			
$\ln(\text{EBT}_t/\text{EBT}_{t-1}) \cdot \text{ALLOW} \cdot \text{DEC}$ (β_7)	-0.466	-2.24**	0.025			
ENT (β_4)				-0.141	-1.67*	0.096
ENT*DEC (β_5)				0.015	0.12	0.901
$\ln(\text{EBT}_t/\text{EBT}_{t-1}) \cdot \text{ENT}$ (β_6)				0.202	1.90*	0.057
$\ln(\text{EBT}_t/\text{EBT}_{t-1}) \cdot \text{ENT} \cdot \text{DEC}$ (β_7)				-0.320	-2.11**	0.035
$\ln(\text{ASSET})$ (β_8)	0.024	1.69*	0.092	0.027	1.80*	0.072
$\ln(\text{LEV})$ (β_9)	0.026	0.67	0.504	0.032	0.86	0.392
$\ln(\text{ROA})$ (β_{10})	0.041	1.34	0.180	0.039	1.27	0.205
$\ln(\text{GROSS})$ (β_{11})	0.601	8.25***	<.0001	0.590	8.12***	<.0001
$\beta_6 + \beta_7 = 0$	F=1.70 (p-value=0.1918)			F=1.18 (p-value=0.2771)		
YR	Included			Included		
IND	Included			Included		
F-Value	18.74***			18.73***		
R ² -Adj	0.1464			0.1464		
N	3518			3518		

- 1) $ALLOW_{t-1} = ALLOWDIFF_{t-1} < 0.00015$ 인 경우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ENT_{t-1} = ENTDIFF_{t-1} < 0.00015$ 인 경우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변수의 정의는 <표 6> 참조
-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적임을 의미함

보이는 바와 같이 각각의 $(\beta_6 + \beta_7)$ 은 모두 음(-)의 값을 가지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는 결산 상 금액과 세법 상 한도액의 차이가 커지는 경우 회계이익의 감소에 따른 법인세부담액 변화율이 작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으며, 결산 상 금액이 세법 상 한도액과 유사하게 계상된 경우에 법인세부담액의 비대칭성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는 본 연구의 [가설 2-1]과 [가설 2-2]를 강건하게 지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법인세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회계이익의 증감에 따른 법인세부담액의 증감율의 비대칭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누진세율이 법인세부담액 증감율의 비대칭성에 미치는 효과를 제외한 후에도 대손충당금 및 접대비가 한도액에 근접한 경우 법인세부담액 증감율의 비대칭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¹¹⁾ 그 결과는 주요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나 누진세의 효과를 통제한 경우에도 본 연구 가설은 강건함을 보이고 있다.

V. 결 론

우리나라의 과세소득은 결산조정원칙에 따라 회계이익에서 출발하여 세무조정에 의해 산출되며 회계기준과 세법이 대부분의 수익·비용 항목을 동일한 기간에 수익(또는 익금)과 비용(또는 손금)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산 상 계상된 금액은 세무조정 없이 그대로 과세소득에 반영되고 과세소득을 기본으로 산출된 법인세부담액은 회계이익과 정(+)비례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회계이익이 증가하는 경우의 법인세부담액 변화율과 회계이익이 감소하는 경우의 법인세부담액 변화율이 대칭적으로 나타나게 됨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수익·비용 항목과는 달리 대손충당금 및 접대비 등은 결산 상 계상된 비용을 전액 손금으로 인식하지 않고 세법 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한도액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법 상 손금 산입액을 규정하고 있는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회계이익은 감소하지만 과세소득은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회계이익의 감소와 동일한 비율로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회계이익의 감소에 따른 법인세부담액의 감소율은 회계이

11) 이를 위해서 2001년부터 2007년까지는 (과세표준-1억)/총자산의 절대값이 0.001보다 작은 경우,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과세표준-2억 또는 200억)/총자산의 절대값이 0.001보다 작은 경우를 $ALLOW_{it-1}$ 와 ENT_{it-1} 각각의 더미변수 1인 경우에서 제외하고 동일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익의 증가에 따른 법인세부담액의 증가율에 비하여 작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세법 상 규정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들로 인해서 회계이익의 증감에 따른 법인세부담액의 변화율이 비대칭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이를 검증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비대칭성은 정보이용자들로 하여금 회계 및 세무 정보를 해석하기 어렵게 하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정보의 유용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비대칭성을 최초로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12년도까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Anderson et al.(2003)의 원가 비대칭성 모형을 준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회계이익이 증가하는 경우 회계이익의 변화에 따른 법인세부담액의 변화율을 의미하는 회귀계수는 유의한 양(+)의 값을 보였으며, 회계이익 감소 시 법인세부담액의 변화율과 관련된 회귀계수는 유의한 음(-)의 값을 보여 예측한 바와 같이 회계이익의 증감에 따른 법인세부담액의 변화율은 비대칭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의 대손충당금과 접대비 항목이 세법 상 한도액과 유사한 경우에 회계이익의 증감에 따른 법인세부담액의 변화율의 비대칭성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만약 전기에 결산 상 계상된 관련 항목이 세법 상 한도액과 차이가 크다면 과세소득 계산 시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거나 혹은 전기와 당기의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이 과세소득의 증감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련 항목의 증감이 법인세부담액 변화율의 비대칭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동 항목들의 세법 상 한도액이 전기와 당기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하며, 향후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대손충당금 한도액 추정 시 연구 자료의 제약으로 인하여 세법 상 전기대손금 한도기준을 사용하지 못하였으며, 접대비의 경우에도 연구 자료의 제약 상 손익계산서에 공시된 접대비만을 세무 상 접대비로 간주하였다는 점의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분석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이러한 한계점을 감안한 주의 깊은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계기준과 세법에서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계정과목을 이용한 이익조정이나 조세회피를 분석한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는 동 항목들로 인하여 회계보고와 세무보고 간의 관계가 비대칭적인 행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둘째, 손금산입 한도액을 정하는 세법 규정으로 인해 야기되는 회계보고와 세무보고 간의 비대칭성은 재무정보이용자들이나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공시되는 회계자료를 통해 세무관련 정보를 유추함에 있어서 보다 높은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조세정책 관련 담당자나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손금산입 한도액에 대한 세법 규정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숙고하게 하는 기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셋째,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한 세법의 회계기준 준종의 원칙을 보다 확대하여야 할 논리적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구정호 · 박연희 · 백태영. 2009. “전략적 선택에 따른 원가행태의 비대칭성”, 회계저널 제18권 제4호 : 65-92.
- 김지홍 · 이명건 · 유혜영. 2012. “감사보수의 비대칭적 행태”, 경영학연구 제41권 제4호 : 809-836.
- 노희천. 2009. “세무이익의 정보효과-주가관련성과 이익예측력을 통한 실증분석”, 세무학연구 제26권 제1호 : 33-69.
- 문호은 · 홍철규. 2010. “원가행태의 비대칭성과 산업별 특성 차이에 대한 종합적 분석”, 관리회계연구 제10권 제1호 : 1-38.
- 송승아 · 안태식 · 정형록. 2010. “한국제조기업의 비대칭적 원가행태에 대한 재조명”, 회계저널 제19권 제1호 : 253-280.
- 심한택 · 권순용. 2003. “세전순이익의 크기와 기간별 변동유형에 따른 조세전략의 차이”, 세무학연구 제20권 제2호 : 173-199.
- 오광욱 · 정석우. 2010. “한계세율과 과세소득과 관련된 회계선택과의 관계”, 세무학연구 제17권 제4호 : 43-79.
- 윤재원 · 유상열 · 이석영. 2004. “세전순이익의 증감에 따른 법인세평준화 정도의 비대칭성”, 세무학연구 제21권 제4호 : 7-37.
- 이석영 · 유상열 · 윤재원. 2004. “비대칭적 원가행태의 산업별 차이”, 회계와 감사연구 제40호 : 59-81.
- 장승현 · 백태영. 2009. “기업의 경영조건이 비대칭적 원가행태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34권 제4호 : 71-107.
- 장지인 · 정준희. 2012. “비용항목을 통한 이익조정-법인세율 인하가 원가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제37권 제3호 : 239-275.
- 정문중. 2009. “원가관리실무의 효율성 평가 : 외환위기 사태 이전과 이후의 원가하방경직성 비교를 통해”, 관리회계연구 제9권 제2호 : 139-162.
- 정문중 · 이성욱. 2009. “설비용량 조정과 원가 하방경직성의 관계”, 관리회계연구 제9권 제1호 : 29-50.
- 최원욱 · 이현아 · 조정은. 2014. “조세계획의 수단으로서의 영업외손익 항목 조정에 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31권 제3호 : 75-112.
- Anderson, M., R. Banker, and S. Janakiraman. 2003. Are Selling, General, and Administrative costs “Sticky”?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41 (1) : 47-63.
- Banker, R. D., M. Ciftci, and R. Mashruwala. 2006. The Effect of Prior-Period Sales Changes on Cost Behavior. Working Paper.

- Balakrishnan, R., M. J. Petersen, and N. S. Soderstrom. 2004. Does Capacity Utilization Affect the “Stickiness” of Cost? *Journal of Accounting, Auditing and Finance* 19 (3) : 283–299.
- Calegari, M. 2000. The effect of tax accounting rules on capital structure and discretionary Accrual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0 (1) : 1–31.
- Chen C. H, H. Lu, and T. Sougiannis. 2008. Managerial Empire Building,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Asymmetrical Behavior of Selling, General, and Administrative Costs. Working paper.
- Choi, W. W., H. Y. Lee, and B. W. Jun. 2009. The provision of tax services by incumbent auditors and earnings management : Evidence from Korea. *Journal of International Financial Management and Accounting* 20 : 79–103.
- De Villers, C., D. Hay, and Z. Zhang. 2013. Audit fee stickiness. *Managerial Auditing Journal* 29 (1) : 2–26.
- Hanlon, M. 2005. The persistence and pricing of earnings, accruals and cash flows when firms have large book–tax difference. *The Accounting Review* 80 (1) : 831–863.
- Hanlon, M., K. Stacie, and S. Terry. 2005. Evidence for the possible information loss of conforming book income and taxable income.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48 (2) : 407–442.
- Lev, B., and D. Nissim. 2004. Taxable income, future earnings, and equity values. *The Accounting Review* 79 (4) : 1039–1074.

Asymmetry in the Change of Corporate Tax Burden in Response to the Change in Book Income

Hyun-Ah Lee* · Yun Sung Koh**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the association between financial reporting and tax reporting are affected by the items that are treated differently by the accounting standards and tax laws. Such items are represented by allowance for uncollectable accounts and entertainment expense and are considered most significant in tax adjustments of Korean firms. Since these items are tax deductible as long as they are within the limit specified by the tax law, taxable income would not be reduced under the circumstances where book income is decreased. More specifically, when the allowance for uncollectable accounts or entertainment expense is increased over the tax limit, taxable income is not decreased because it is not affected by the amount of expense over the tax limit which is subject to the tax adjustments. Thus, we anticipate that change in corporate tax burden is asymmetric, which implies that when the book income decreases the corporate tax burden decreases at a lower rate than the rate at which it increases as book income increases.

We analyze listed firms from 2001 to 2012 to investigate the asymmetry in the change in corporate tax burden by adjusting the model of cost stickiness developed by Anderson et al.(2003). We find following empirical results. First, the percentage of decrease in tax burden for an increase in book income is smaller than the percentage of increase in tax burden for an equivalent increase in book income. Second, such asymmetry of change in corporate tax burden is stronger under the circumstances where the allowance for uncollectable accounts or entertainment expense in the prior period is recognized slightly less or more than the tax limit.

This study makes a contribution to the literature by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analyzing the asymmetric association between financial reporting and tax reporting. We expect that our findings will cast a caveat that financial information users and stake-holders should be careful when inferring tax information from publicly announced financial data. In addition, our findings will provide tax authorities or policymakers with opportunities to re-consider the validity of tax limit rules.

〈Key words〉 Book Income, Taxable Income, Corporate Tax Burden, Asymmetry

*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Gachon University, KICPA, halee@gachon.ac.kr, First Author

**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max0907@hufs.ac.kr, Corresponding Author